

제증명 발급 수수료규정

제정 : 2011.04.01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1. 22., 2021. 12. 01.>

제2조(적용범위) 제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3조(제증명의 발급) 국문 또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은 신청이 있으면 당일에 발급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4조(증명서 발급기준) 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학증명서 :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
2. 졸업증명서 : 본 대학교를 졸업한 자
3. 졸업예정증명서 : 4개 학기(3년제 학과의 경우 6개 학기)를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56학점(3년제 학과의 경우 96학점) 이상인 자
4. 성적증명서 : 본 대학교에 1학기 이상 재학한 자
5. 학적부 :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
6. 재적증명서 :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
7. 수료증명서 :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 사정에서 탈락된 자
8. 기타 학력에 관계되는 증명서

제5조(징수대상 요금)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요금은 다음에 의한다.

증명별	구분	수 수 료		비고
		국문	영문	
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학 적 부 재적 증명서 수료 증명서		400원	800원	

제6조(징수면제)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한 증명서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수수료 징수 및 처리) ① 제증명의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발급 부서에 납입한 후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.

② 납입된 수수료는 증명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